

『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
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2월 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2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2월 19일

제13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 및 「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의 폐지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”로 변경

- 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 및 신고방법, 포상금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(안 제6조 및 제6조의 2~4)

- ※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(안 제6조의 3)

-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 안에서 지급
- 포상금은 1인, 1단체에 월20만원, 연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
- 신고 유효기간은 위반행위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

- ※ 포상금지급 제외규정 (안 제6조의 4)

-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
- 익명 신고 및 불법 행위자를 알지 못할 경우
-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기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반영

라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 및 「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됨에 따라 ,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안으로서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기존의 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 금액을 정함에 있어 불법 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50%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을 안 제6조 별표2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며 이 경우 신고자의 거주지를 구미시 관내 거주자에 제한시킴으로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

-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이나 제한기준 등이 미비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꾼 난립으로 불법쓰레기 투기에 따른 민원발생 및 포상금 지급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바, 안 제6조의 2(신고방법)와 안 제6조의 3(신고포상금 지급 방법) 및 안 제6조의 4(신고포상금 지급 제외)의 규정을 마련 하였음.
- 2008년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액은 16,000(천원) 계상 되어 있으며, 1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504건에 9,155(천원) 지급 예정으로 타시군 전문신고꾼에 의한 신고건수가 95%로, 신고포상금 타지역 유출이 과다한 실정임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꾼 발생 예방 및 일반 시민들의 자율감시활동 참여 유도로 구미시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포상금 지급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으로 인한 신고율 저하도 우려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